

#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2. 6. 30

김광욱의원의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1992. 7. 2

다. 상정일자 : 1992. 7. 7

### 2. 제안설명요지 : 별첨안 참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: 별첨검토보고서 참조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#### • 질의(조용근위원)

① 안 제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현지교통비의 구체적 금액 질의

② 지방자치법개정이 91. 12. 31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이유에 대한 질의

#### • 답변(구본춘위원)

- 의장, 부의장은 1일 4,500원이고 일반의원은 4,000원임을 답변(별표1 참조)

#### • 답변(전문위원)

-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 상급관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처리하느라 다소 시간이 필요하였습.

### 5. 토론요지

- 찬성토론 :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원안 가결을 찬성함

### 6. 심사결과-원안가결

재석위원 7명, 찬성 6명, 기권 1명.